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
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시·도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20271호, 2024. 2. 13. 공포, 2024. 8. 14. 시행)됨에 따라,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, 법 제10조의2·제16조·제17조·제18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중앙 및 시·도 소방심리지원단 구성·운영 등(제9조의2 신설)

- 1) 중앙소방심리지원단 구성 규정
- 2) 중앙소방심리지원단 임무 규정
- 3) 시·도 소방심리지원단 구성 규정
- 4) 시·도 소방심리지원단 임무 규정
- 5) 세부 필요한 사항 소방청 훈련 위임 규정 신설

나.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(제12조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중앙 및 시·도 소방심리지원단 구성·운영 등)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청에서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하며 심리지원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.

②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한다.

1.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설정
2.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
3.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 추진
4.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
5. 소방공무원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·시행
6. 심신건강 보호를 위한 소방청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
7. 국내·외 대형재난 현장 등에 대한 긴급 심리지원
8.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

고 인정하는 업무

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시·도 소방심리지원단은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하며 심리지원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.

④ 시·도 소방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.

1.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 추진
2.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
3. 소방공무원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·시행
4. 심신건강 보호를 위한 소방본부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
5. 대형재난 현장 등에 대한 긴급 심리지원
6.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및 시·도 소방심리지원단의 세부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제12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소방청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시·도지사, 소방관서의 장,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

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앙 및 시·도 소방심리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무
2.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사무
3. 법 제17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
4. 법 제18조에 따른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2(중앙 및 시·도 소방심리지원단 구성·운영 등)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청에서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하며 심리지원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.</u> <u>②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한다.</u> <u>1.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설정</u> <u>2.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</u> <u>3.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 추진</u> <u>4.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</u> <u>5. 소방공무원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·시행</u> <u>6. 심신건강 보호를 위한 소방</u>

청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

7. 국내·외 대형재난 현장 등에 대한 긴급 심리지원

8.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시·도 소방심리지원단은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하며 심리지원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.

④ 시·도 소방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.

1.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 추진

2.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

3. 소방공무원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·시행

4. 심신건강 보호를 위한 소방본부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

<신 설>

및 운영

5. 대형재난 현장 등에 대한 긴급 심리지원

6.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및 시·도 소방심리지원단의 세부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제12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소방청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시·도지사, 소방관서의 장,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앙 및 시·도 소방심리지원단 운영

	<u>에 관한 사무</u> 2. <u>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사무</u> 3. <u>법 제17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</u> 4. <u>법 제18조에 따른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에 관한 사무</u>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소방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423